취락지구

녹지지역 · 관리지역 · 농림지역 · 자연환경보전지역 ·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

용어설명

취락이란 ‘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 ’ 라고 할수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취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.

취락지구는 예전 ‘ 국토이용관리법 ’ 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,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· 농림지역 · 자연환경보전지역 ·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 되고 있다.

취락지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1. 자연취락지구 :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·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2. 집단취락지구 :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되며,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※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

1.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

2.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(호수밀도)가 10호 이상일 것. (다만,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,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)

3.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,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· 지구 및 구역의

경계선, 도로, 하천, 임야,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,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관련법규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관련용어

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

참고

-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From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 - **DB World**

Permanent link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%EA%B1%B4%EC%84%A4%EC%9A%A9%EC%96%B4/%EC%B7%A8%EB%9D%BD%EC%A7%80%EA%B5%AC

Last update: **2016/04/07 03:59**